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9. 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29호로 2013년 8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운영중인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5조의2)
- 나. 기금의 준용규정 변경(안 제14조)
- 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관련 준용규정 등을 변경함.
- 기금 본래의 고유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기금 운용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